

동두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2. 3. 11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 3. 11

다. 상정일자 :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1981. 7. 1 조례 제36호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나 이는 세무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의 형평성 문제와 또한 현재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없으므로 체납액 징수여부 기준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로 인한 최근 몇 년간 예산요구 및 계상 실적이 전혀 없는등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동조례 폐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폐지조례안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세원 발굴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나, 몇 년간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어 실효성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음.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난 97년도 감사원 감사시 징수 포상금 운영에 대한 부당사례를 지적받기도 하였으나, 본 조례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좋은 제도로 판단하여 2001년부터 징수포상금을 다시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중

2000년도에 7개시군, 2001년도에 9개시군에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조례 폐지보다는 징수포상금에 대한 구체적 지급기준 등을 설정하여 세수증대를 위해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가 폐지될 경우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원 발굴대책이 강구되어야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없 음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